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관광업체 제2차 간담회

- 일 시 : 2021. 8. 5.(금) 16:00 ~ 18:00
- 장 소 :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http://vc.on-nara.go.kr>)
- 참석대상
 - (주 최) 해양수산부
 - (관광업체) M1971, 디스커버 제주, 사우스웨스트클럽, 김녕 요트투어
 - (관계기관) 고래연구센터,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주도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
- 주요내용
 - (안건-1) 제1차 간담회 결과
 - (안건-2)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개정안
 - (안건-3) 관찰가이드 홍보 및 활용방안
 - (안건-4) '국민감시단' 운영(안)
 - (안건-5) 실천협약 체결(안)
 - (자 문)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
 - (참고-1)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참고-2) 제트스키 이용자 행정지도 협조요청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I. 제1차 간담회 결과

□ 추진 배경

- 생태관광 업체 대상 관찰 가이드준수 요청 및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 모색을 위한 관련 업체 간담회 추진

□ 개 요

- (일시/장소) 2021. 7. 7(수) 14:00~16:00 / 제주도청
- (참석) 해양생태과, 생태관광업체(M1971, 디스커버 제주, 사우스웨스트클럽, 김녕 요트투어), 제주해양관리단, 제주도청, 해양환경공단

□ 주요 내용

- (현황 설명) 제주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 현황, 선박관광에 의한 서식지 위협요인(국내 모니터링 결과 및 해외사례), 실태점검(6.24) 결과* 등 설명

* 전반적으로 관찰가이드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돌고래와 원거리(1,500~300m) 시 선박 속도 일부 위반 발생

** 점검시 출몰 돌고래가 5~10마리 이하로 관찰되어 돌고래 무리들 사이 선박 진입 및 Bow-ride 유도 등은 발생하지 않음

- (관찰가이드 준수 논의) 관찰가이드 선박내 부착, 관광객 대상 관찰 가이드 준수 음성 안내*, 관찰가이드 준수 협약식** 체결 등 합의

* 우리부에서 제작한 안내 녹음파일을 관광 전 선박에서 재생

** 해수부-제주도청-선박관광업체(4개소) 간 실천 협약식 체결

- (제도마련) 「해양생태계법」 내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교란행위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 내용 공유*

* (업체의견) 관련 규정 마련시 돌고래와의 거리 및 선박속도에 대한 규정 단순화 요청

II.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개정안

- (배경) 수년째 무리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안정적인 생육환경 조성 및 무리성장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주요개정내용)
 - 크기와 방향개념 '속도'를 속도의 크기 개념인 '속력'으로 변경
 - 돌고래 생태적 습성으로 유발되는 선수파 타기(Bow-ride)는 돌고래 선박 충돌, 무리이탈, 먹이활동 및 휴식, 출산·포육 시간 저해 등을 유발시켜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성장 및 안정적인 생육환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선수 파타기 방지 규정 마련
 - 돌고래와의 거리 300~50m에서 '항적이 생기지 않은 속도'는 판단이 모호 하므로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로 변경
 - 수상오토바이,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제트서프 등 수상레저기구의 돌고래 접근금지 가이드 신설

현 행	개 정 안
<p>(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행동)</p> <p>-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모든 방향을 살피고 주의 깊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박은 돌고래를 쫓거나, 둘러싸거나, 이동 경로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항상 선박의 <u>속도를</u> 줄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해서도 안 됩니다.</p>	<p>(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행동)</p> <p>-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모든 방향을 살피고 주의 깊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박은 돌고래를 쫓거나, 둘러싸거나, 이동 경로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항상 선박의 <u>속력을 천천히</u> 줄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해서도 안 됩니다.</p>

- 돌고래 관찰은 한 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며, 무리에 새끼 돌고래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돌고래가 Bow-ride하려고 접근한다면, 돌고래의 이동에 맞추어 코스와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Bow-ride를 유도하려고 돌고래 무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돌고래가 수변위로 점프하거나, 꼬리를 높게 흔들거나, 지느러미를 치는 것은 선박에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통신을 최소화하며, 소나(음향탐지기)를 비롯한 각종 수중 소리는 재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때나

- 돌고래 관찰은 한 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며, 무리에 새끼 돌고래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돌고래가 선수와 타기를 하려고 접근하면 선박은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가 흥미를 잃고 선박에서 떨어진 후 다시 출발하여야 합니다. (단, 압초 회피 등 선박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선수과 타기를 유도하려고 돌고래 무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돌고래가 수변위로 점프하거나, 꼬리를 높게 흔들거나, 지느러미를 치는 것은 선박에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확성기 등을 통한 통신은 최소화하며, 소나(음향탐지기)를 비롯한 각종 수중음향장비는 재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때나

갑자기 진로 또는 속도를 변경할 때, 그리고 돌고래가 급하게 물속으로 사라진다면, 선박을 돌고래 무리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관찰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항상 돌고래 뒤쪽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돌고래 관찰 시 금지 사항)

- 먹이지 않기
- 가까이와도 만지지 않기
- 같이 수영하지 않기
- 돌고래가 놀랄 수 있는 갑작스런 행동하지 않기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속도 제한)

- 돌고래와의 거리 1,500~700m 속도를 10노트까지 줄인다
- 750~300m 속도를 5노트 이하로 줄이고 옆에서부터 접근한다
- 300~50m 항적이 생기지 속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거리와 방향 제한)

- 전후방 접근 금지 구역 :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급하게 잠수하여 장시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 변화가 관찰되면, 선박은 돌고래 무리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관찰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항상 돌고래 뒤쪽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돌고래 관찰 시 금지 사항)

- 먹이지 않기
- 가까이와도 만지지 않기
- 같이 수영하지 않기
- 돌고래가 놀랄 수 있는 갑작스런 행동하지 않기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속력 제한)

- 돌고래와의 거리 1,500~700m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인다
- 750~300m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이고 옆에서부터 접근한다
- 300~50m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거리와 방향 제한)

- 전후방 접근 금지 구역 :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 한다

- 드론 접근 금지 구역 : 드론을 사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 접근 주의 구역(300~50m) : 돌고래 반경 300m 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 접근해야 한다.

- 접근 금지 구역(50~0m) :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단,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온 경우는 제외)

모터보트와 작은 선박, 요트, 낚싯배의 경우 50m 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 한다

- 드론 접근 금지 구역 : 드론을 사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 접근 주의 구역(300~50m) : 돌고래 반경 300m 부터는 속력을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 접근해야 한다.

- 접근 금지 구역(50~0m) :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단,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온 경우는 제외)

모터보트와 작은 선박, 요트, 낚싯배의 경우 50m 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수상레저기구등 준수사항)

- 수상오토바이,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제트서프 등의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로 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수상레저기구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 중 우연히 돌고래 무리와 만나게 되면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이고 무리에서 천천히 벗어난다

III. 관찰가이드 홍보 및 활용 방안

- (목적) 남방큰돌고래 생태교육과 관찰가이드 안내를 통해 관광업체의 자발적 준수 의지 표명 및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관광객 이해도 증진
- (액자형 관찰가이드)
 - 남방큰돌고래 생태적 특징, 관찰시 준수사항, 가이드 위반시 제보 연락처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액자형으로 제작하여 선박 내 및 관광객 대기장소 등에 설치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인간에 대한 친화력이 뛰어나고 고래류 중에서 지능이 높은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보호생물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7m, 몸무게는 230kg 정도이며, 평균 수명은 30년으로 알려져 있다.

외형상 큰돌고래와 매우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색깔이 더 밝고 부리가 길며, 복부에 반점이 신재해 있는 특징이 있다. 식성이 다양하여 각종 어류와 오징어류, 새우류와 같은 갑각류를 주로 섭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행동

▶ 돌고래 관찰은 항상 조심조심!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모든 방향을 살펴보고 주의 깊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박은 돌고래를 쫓거나, 몰라베거나, 이동을 겁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항상 선박의 속력을 천천히 줄여야 하고 긴박스러운 발정 전환을 피해야 합니다.

▶ 돌고래와 친해지려면, 먼저 배려해 주세요!
돌고래 관찰은 한 시간 이내로 끝나야 하며, 무리에서 새끼 돌고래가 50m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돌고래가 bow-ride 하려고 접근한다면, 선박은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가 흥미를 잃고 선박에서 떨어질 후 즉시 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slow-ride를 유도하려고 돌고래 무리를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Bow-ride는 배의 70% 정도 후방 돌고래들이 방향지시를 선박이 일으키는 파도를 따라 노는 행위를 말하며,

▶ 돌고래를 방해하면 안 돼요!
돌고래가 수면 위로 튀어나오거나, 차리를 높게 흔들거나, 지그재그를 치는 것은 선박에서 자선활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거리를 주어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확실기 동행 통한 동선만 최소화하며, 스나(음향 탐지기)를 비롯한 각종 수중음향장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동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선박을 이동시켜 주세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경우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해를 속도로 이동하거나 급하게 멈추어야 잠시간나마 지는 것과 같은 행동변화가 관찰되면, 선박은 돌고래 무리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관찰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항상 돌고래 위약을 함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속력 제한

돌고래와의 거리	선박 속력
1,500~750m	속력을 10%까지 줄인다.
750~300m	속력을 50% 이하로 줄이고 앞에서부터 접근한다.
300~50m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거리와 방향 제한

전후방 접근 금지 구역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양쪽과 뒤쪽을 피하고 양 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한다.

드론 접근 금지 구역
드론을 사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도표 설명: 돌고래를 중심으로 300m, 100m, 50m 반경의 동심원을 그렸을 때, 전후방 접근 금지 구역(300m~750m), 양측 접근 금지 구역(750m~300m), 접근 금지 구역(300m~50m), 접근 금지 구역(50m~0m)이 표시되어 있다.

접근 금지 구역 (300m~50m)

- 돌고래 반경 300m 부근은 속력을 줄이고 수위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때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로 존재한다면 승객을 기다려야 접근해야 한다.

접근 금지 구역 (50m~0m)

-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단,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 온 경우는 제외.)
- 모티브보트와 작은 선박, 요트, 낚시배의 경우 50m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 관찰 시 금지 사항

선박을 주의 지켜주세요!

수위와 함께 수컷할 수 없어요!

가이드가 지시한 방향대로 보면 돼요!

수위가 놓일 수 있는 갑작스런 행동은 안 돼요!





방해사항 발생시 연락처

해양환경공단 해양센터 051-400-7984
제주도청 대입선교과 064-710-3259

○ (선박 탑승객 대상 남방큰돌고래 생태교육)

- 제작된 오디오 파일을 투어 시작 전 선박에서 1회 이상 재생

안녕하십니까?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방큰돌고래를 보러 가기에 앞서 약 5분 정도 여러분께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선박(요트) 관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사람들에게 친화력이 뛰어나고 고래류 중에서 지능이 높은 제주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 큰 성체의 경우 몸길이 최대 2.7m, 몸무게 230kg 가량이며 머리가 둥글고 주둥이가 도드라지게 돌출한 체형의 중형 돌고래입니다.

주로 봄과 여름에 출산하며, 임신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두족류(오징어), 가끔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먹으며 평균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와 온대 해역에 분포하며 대부분 섬과 해안 주위의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곳 제주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2007년부터 남방큰돌고래의 등지느러미 사진을 통해 이들 개체를 식별한 결과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정착하여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 개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남방큰돌고래를 자료부족종(DD, Data Deficient)에서 2019년에 준위협종(NT, Near Threatened)으로 멸종위기등급을 격상하였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남방큰돌고래를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생태계의 최상위포식자로서 이들의 건강상태와 분포량은 연안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 연안에만 소수 개체가 살고 있는 남방큰돌고래가 혼획이나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여 우리바다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운항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돌고래들의 먹이활동이나 새끼 양육 등 서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찰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요트)도 돌고래가 보이면 속력을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돌고래 옆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돌고래를 더 자세히 보려고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간혹 선박이 정지 한 후 호기심 많은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박을 갑자기 이동시켜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박(요트)이 돌고래를 쫓거나, 둘러싸거나, 이동 경로를 막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선박들끼리도 돌고래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순서를 기다립니다.

돌고래 관찰은 한 시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관찰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항상 돌고래 뒤쪽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돌고래가 선수와 타기를 하려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선박은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가 흥미를 잃고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박은 선수와 타기를 유도하려고 돌고래 무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돌고래를 만나면 주의해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가까이 다가와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없습니다.

넷째, 돌고래가 놀랄 수 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작스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제주바다를 누비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멋진 모습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V. 상시감시단 운영(안)

□ 추진 배경

-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광가이드라인 준수 점검을 통한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지역 생태관광과의 상생 방안 모색

□ 운영 계획

- (구 성) 다양한 분야의 일반시민 추천*을 통한 20명 내외 구성
 - * 해수부 추천 10명(생태전문가, 관광전문가, 일반시민 등), 제주도 추천(5명 제주도민), 시민단체 추천 5명 등
- (운영기간) '21. 9. ~ '22. 8(12개월/3~4명이 월별 1회 점검)
- (주요활동)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및 다양한 분야의 시각에서 개선사항 발굴(비노출 점검)
- (결과 활용) 가이드라인 미준수 지적사항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공유 및 개선, 제시된 건의사항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반영
- (세부추진계획)

항 목	세부 추진계획	주관
1 상시감시단 구성	◆기관별 감시단 추천 및 선정('21.8.)	해양환경공단 제주도청 시민단체
2 사전교육 실시	◆상시감시단 관련 기본교육 실시('21.9)	해양환경공단
3 활동 개시	◆활동계획서 제출·승인 (관광목적 제외) ◆점검실시 (3~4명이 월별 1회 점검)	해양환경공단
4 결과 피드백	◆활동결과 분기별 공유 및 개선사항 제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제주도청 선박관광업체 시민단체

V. 실천협약 체결(안)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돌고래 생태관광업계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 협약서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M1971, 디스커버 제주, 사우스웨스트클럽 및 김녕요트투어는 해양보호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돌고래 관찰가이드 준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관광 발전을 위하여 돌고래 관찰가이드 준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각 기관은 남방큰돌고래의 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돌고래 관찰가이드를 준수하며 규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협력 요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력한다.

제3조(협약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 및 상호 협력한다.

1. 돌고래 관찰가이드(해양수산부) 준수
2. 남방큰돌고래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생태 해설 운영
3. 남방큰돌고래 보호활동 개발 및 참여
4. 남방큰돌고래 생태 정보 및 관련 법령 등 공유
5. 제주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6. 기타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후 방법 및 내용을 결정한다.

제4조(비용부담) 제3조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위한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상호 업무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기간 및 변경)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 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협약의 연장이나 중단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이 서면으로 협의하는 경우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및 분쟁)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및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M1971, 디스커버 제주, 사우스웨스트클럽 및 김녕요트투어 기관의 장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7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월 0일



M1971 요트투어

대표 최기원



디스커버 제주

대표 김형우
대표 허진호



사우스웨스트클럽

대표 김근화



김녕요트투어

대표 김광경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수산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참고 1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제트스키 이용자 대상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홍보

- (현 황) 제트스키 이용자 및 동호인들의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미인지로 제트스키를 이용한 무분별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행태 발생
- (홍보방안)
 - 제트스키 등록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배포
 - 제트스키 활용 수상레저업체 정기 점검 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준수 행정지도
 - 전국 제트스키 동호회 대상 관찰가이드 준수요청 공문 발송
 - 수상동력면허 시험 등에 해양보호생물 관찰가이드 관련 문항 출제



제트스키 동호회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교란 행위(6월 26일)